



제429회국회(임시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7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인하(김영진의원안, 정부안)	2
2.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신영대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11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1.

(3) 회 부 일 : 2025.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인하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2) ○ 적용대상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분리과세 세율 : - (55세~69세) 5%, - (70~79세) 4%, - (80세~) 3%, - <u>(종신수령) 4%</u> ○ 한도: 연간 1,500만원 이하	☐ <u>종신수령 방식의 경우 분리과세 세율 인하</u>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분리과세 세율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종신수령) 3%</u>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275),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2건의 개정안은 종신수령 방식의 연금에 대해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종신계약¹⁾에 따라 연금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함으로써 노후 연금수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 현재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²⁾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하거나 연금소득만을 별도로 분리과세(15%)³⁾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2013년 이전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었고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었으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한정⁴⁾하면서 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22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2)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가 과세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4%의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3)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4) 참고로 공적연금에 따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최근의 계속되는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114.18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자료: 「소비자물가조사」,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년의 한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 2024년의 물가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추세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등을 기점으로 지
속된 공급망 체계의 변동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연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연령계층에서는 물
가상승의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⁵⁾

[2021년~2023년 간 월 평균 노후생활비 변동]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3년	증가율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24.3만원	136.1만원	9.4%
	적정 노후생활비	177.3만원	192.1만원	8.3%
부부	최소 노후생활비	198.7만원	217.1만원	9.3%
	적정 노후생활비	277.0만원	296.9만원	7.2%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KOSIS 국가통계포털)

5)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6.
이에 따르면 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4배 높았으며, 저소득 고
령층의 경우 1.20배 높음.

둘째,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후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OECD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⁶⁾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 노동시장의 취약성, 가족부양 추세의 약화, 부동산자산 치중에 따른 자산의 소득화 비율 저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퇴 후 생애 전 기간에 걸친 안정적 현금흐름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인임.

따라서 종신계약 방식의 연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세율을 하향함으로써, 연금소득 수령자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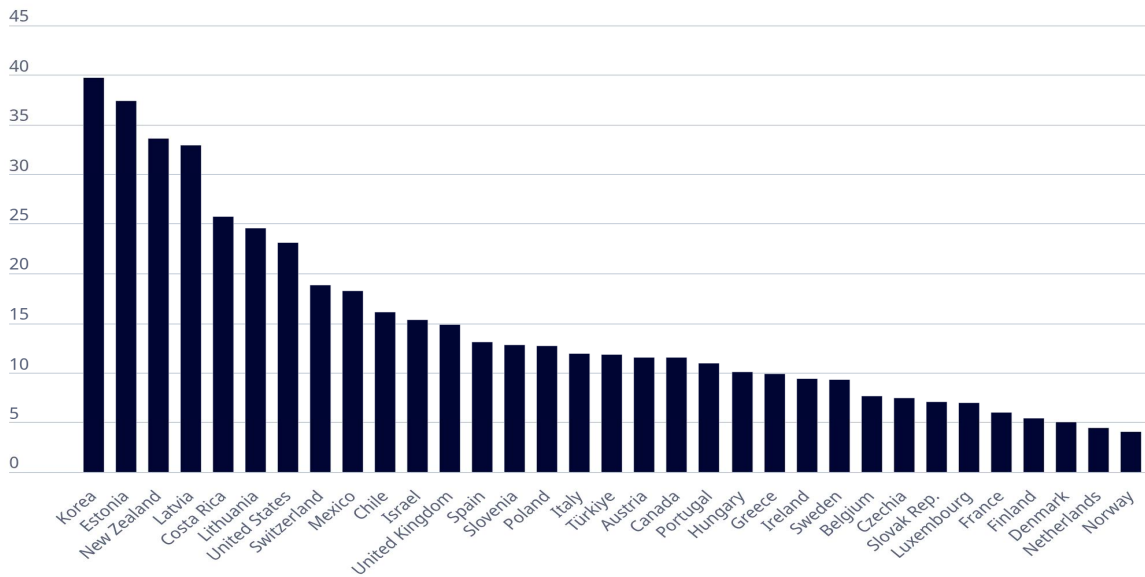
[OECD 국가별 빈곤율 비교]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1	대한민국	39.7	14.9	12	영국	14.9	11.8	23	아일랜드	9.5	7.0
2	에스토니아	37.4	16.2	13	스페인	13.1	13.7	24	스웨덴	9.4	8.4
3	뉴질랜드	33.7	14.3	14	슬로베니아	12.8	7.9	25	벨기에	7.7	6.9
4	리투아니아	33.0	16.9	15	폴란드	12.8	9.1	26	체코	7.6	6.2
5	코스타리카	25.8	21.0	16	이탈리아	12.0	12.2	27	슬로바키아	7.2	9.4
6	리투아니아	24.6	14.1	17	튀르키예	11.9	13.2	28	룩셈부르크	7.0	8.9
7	미국	23.1	18.1	18	오스트리아	11.6	9.6	29	프랑스	6.1	8.3
8	스위스	18.8	10.7	19	캐나다	11.6	11.9	30	핀란드	5.5	6.7
9	멕시코	18.3	15.0	20	포르투갈	11.0	11.2	31	덴마크	5.0	6.3
10	칠레	16.2	16.3	21	헝가리	10.1	9.9	32	네덜란드	4.4	7.1
11	이스라엘	15.3	16.8	22	그리스	10.0	11.2	33	노르웨이	4.1	8.0

6)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Poverty rate

66 year-olds or more, % of population, 2022



Source: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data.oecd.org/income-distribution/)

© OECD

자료: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주: 순위는 빈곤율 기준

OECD의 빈곤율 정의: 해당 연령층의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율

셋째, 퇴직연금의 경우 2022년 중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대부분(92.9%)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⁷⁾하여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율]

구 분	계좌기준		금액기준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연금수령 비율	92.9%	7.1%	58.1%	41.9%

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3.7.

7)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7.1%(퇴직급여액 전체 12.1조원 기준 41.9%)로 나타남. 참고로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5,550만원임. (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3.7.)

또한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계좌의 수령형태를 살펴보면 확정기간형이 5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종신행은 38.9%로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10년의 미만 단기 수령형태가 46.9%로 나타나고 있는데,⁸⁾ 연금소득을 통해 노후 전 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종신행 방식의 연금소득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해당 방식에 선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종신행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2년 기준 종전 1,200만원 이상의 사적 연금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합과세(세율 6~45%)를 적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2022년 및 2023년의 세법개정으로 각각 1,200만원 및 1,500만원 이상의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 차례 확대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종신행 연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세율을 인하할 경우, 이미 과세이연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라는 이중의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 연금수령자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될 수 있음. 특히, 연금계좌 가입 및 납입은 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지므로⁹⁾, 해당 계층에 감면수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는

8)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2025.7.31.

9) 근로소득구간별 연금계좌 가입자 수는 2,000만원 미만 구간 0.1%, 2,000만원~4,000만원 구간 2.5%인 반면,

동일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과세 체계에 남아 있는 노후 근로·사업소득자들에 비해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근로소득구간별 연금저축 가입자]

(단위 : 천명)

근로소득구간 구분(만원_)	2천 ↓	2~4천	4~6천	6~8천	8천~1 억	1억 ↑	전 체
가입률(B/A)	0.1%	2.5%	10.1%	22.6%	34.6%	50.7%	10.0%
가입자수(B)	6	180	370	439	393	706	2,094
급여소득자수(A)	5,433	7,266	3,682	1,943	1,136	1,393	20,852

자료: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2025.7.31.

주: 급여소득자수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기준('24년 국세통계연보)

셋째, 연금수령 단계의 세율인하가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부족할 것”이라는 항목이 44.8%(1,2순위 복수응답 기준 57.9%), “노후소득 여유 보장”이 27.3%(복수응답 기준 63%)로 각각 높게 나타난 반면, “세제혜택 목적”으로 가입한 응답자는 2.7%(복수응답 기준 8%)에 불과해, 세제 혜택이 가입 동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¹⁰⁾ 따라서 세제 혜택을 통한 종신계약 유인효과에 대한 면밀한 선행검토 없이 세율인하를 추진할 경우, 신규 종신계약 가입자를 증가시키려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종신수령을 계획

8,000만원~1억원 구간은 34.6%, 1억원 이상 구간은 50.7%로 연금저축 가입이 고소득자 위주로 집중되어 있음.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2025.7.31.

10) “고령화와 노후준비”, 보험연구원, 2016.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한도액까지 납입해 놓은 고소득자에게 더 낮은 세액을 적용해 주는 데 그칠 위험이 있음.

[개인연금 가입 동기]



자료: “고령화와 노후준비”, 보험연구원, 2016.

□ 한편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라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하고(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3),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30억원(연평균 186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정부안	△146	△164	△184	△206	△230	△930	△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

2.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신영대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신영대의원안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 3) ○ 수령연차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70</u> ○ 수령연차 1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60</u> <신 설> <신 설>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구간 세분화 ○ (현행과 같음) ○ 수령연차 <u>10년 초과 20년 이하</u>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60</u> ○ <u>수령연차 20년 초과</u>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50</u>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및 종신계약시 세율 신설 ○ 수령연차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50</u> ○ 수령연차 1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30</u> ○ <u>사망시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의 경우</u>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10</u> (안 제3호다목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신영대의원안 2025. 3. 26. 발의(의안번호 9391),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275),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을 적용비율을 인하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 및 정부안은 연금 수령연차 10년 초과 구간(현행 세율 60%)를 세분화하여, ①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의 세율을 60%로, ② 20년 초과 구간의 세율을 50%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이고,

신영대의원안의 경우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세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연금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한 경우 세율을 60%에서 30%로 각각 인하하고, 사망시까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더 높은 비율(90% 인하)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려는 것임.

□ “이연퇴직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11)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계좌¹²⁾에 이체함으로써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을 말하며, 거주자는 연금계좌에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외수령¹³⁾ 할 수 있음.

11)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12)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함.(「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등으로 분류하며,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023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인원은 321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3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4.12.16.”)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¹⁴⁾에 따라 ①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퇴직소득세율)의 70%의 세율로, ②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고(김영진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부안), 종신계약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의 10%를 적용하여 저율과세함으로써(신영대의원안) 퇴직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개정안들은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여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측면이 있음.

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frac{\text{연금계좌의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1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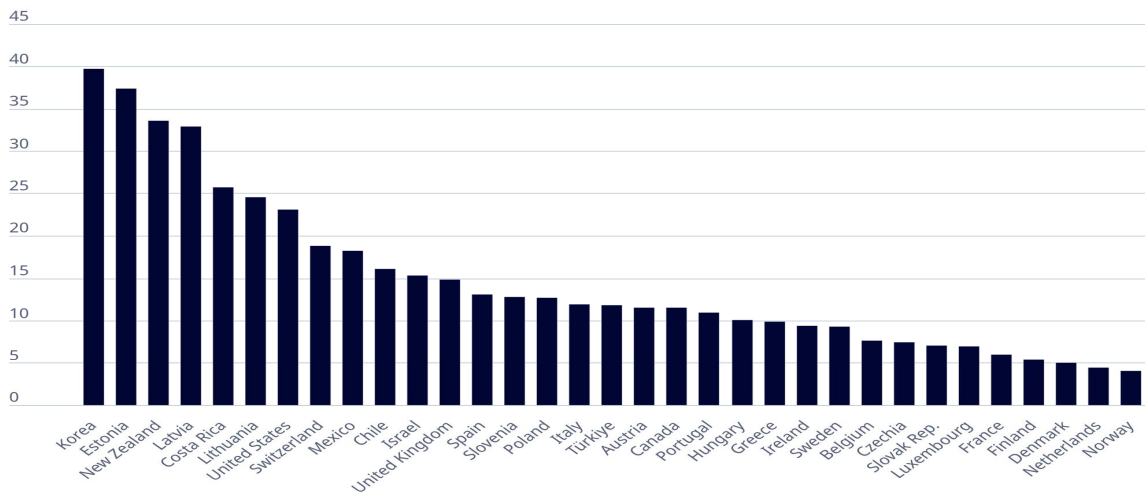
OECD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¹⁵⁾

[OECD 국가별 빈곤율 비교]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1	대한민국	39.7	14.9	12	영국	14.9	11.8	23	아일랜드	9.5	7.0
2	에스토니아	37.4	16.2	13	스페인	13.1	13.7	24	스웨덴	9.4	8.4
3	뉴질랜드	33.7	14.3	14	슬로베니아	12.8	7.9	25	벨기에	7.7	6.9
4	리투아니아	33.0	16.9	15	폴란드	12.8	9.1	26	체코	7.6	6.2
5	코스타리카	25.8	21.0	16	이탈리아	12.0	12.2	27	슬로바키아	7.2	9.4
6	리투아니아	24.6	14.1	17	튀르키예	11.9	13.2	28	룩셈부르크	7.0	8.9
7	미국	23.1	18.1	18	오스트리아	11.6	9.6	29	프랑스	6.1	8.3
8	스위스	18.8	10.7	19	캐나다	11.6	11.9	30	핀란드	5.5	6.7
9	멕시코	18.3	15.0	20	포르투갈	11.0	11.2	31	덴마크	5.0	6.3
10	칠레	16.2	16.3	21	헝가리	10.1	9.9	32	네덜란드	4.4	7.1
11	이스라엘	15.3	16.8	22	그리스	10.0	11.2	33	노르웨이	4.1	8.0

Poverty rate

66 year-olds or more, % of population, 2022



Source: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OECD

자료: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주: 순위는 빈곤율 기준

OECD의 빈곤율 정의: 해당 연령층의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율

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2019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3. 9. 20.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 노동시장의 취약성, 가족부양 추세의 약화, 부동산자산 치중에 따른 자산의 소득화율 저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퇴직급여의 ‘연금화(annuitization)’ 비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이유임.

퇴직금의 유형별 수령형태를 살펴보면, 2023년 중 퇴직연금 수급(만 55세이상)을 개시한 계좌 중 89.6%가 일시금을 선택하였으며 연금 수령은 10.4% 수준에 불과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시금 수령의 계좌당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연금 수령계좌의 평균 수령액(1억 3,976만원)의 11.8% 수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⁶⁾

이러한 현상은 과거 퇴직일시금 수령 관행, 퇴직일시금에 대한 낮은 세율 등 제도적 영향, 정년 이후 연금수령 시작 시점까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 절벽’¹⁷⁾구간으로 인한 생활비 마련 필요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연금형태 등 정기소득보다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선호되고, 해당 일시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노년기 빈곤 위험이 급등하게 됨.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낮은 점, 상대적으로 연금 적립규모가 작은 계좌들이 일시금 형태의 연금외수령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소득을 연금

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4년 5월 17일자

17)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 (60세 이후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형태로 수령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¹⁸⁾ 따라서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종신수령 계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이연퇴직소득을 장기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연금계좌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¹⁹⁾ 목돈 필요성 등을 사유로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중도인출 또는 해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점²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²¹⁾, 개정안에 따른 세금부담의 일부 경감만으로는 이연퇴직소득을 장기 연금수령방식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신영대의원안에 따라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금소득세수는 2026년 596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3,901억원(연평균 7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18) 특히 일시금은 노후자금이 아닌 단기간의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국가들은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기도 함. 네덜란드는 10만 유로(1억 5,000만원 상당) 이하 퇴직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금지화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함.

19)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의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로 2025년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75%보다 낮음.

20) 실제로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등 여러 항목을 공제해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4~5%에 불과하여 연금소득세 실효세율(1~2%가량)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음. “퇴직급여, 연금으로 장기수령할수록 세금 더 감면받는다”, 세무사신문. 2025.2.24

21) 강성호, 류건식,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제13호, 2017. 9. 10.

[신영대의원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신영대의원안	△596	△677	△768	△871	△989	△3,901	△7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